

의안 번호	523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0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정윤주 의원 외 16명

나. 의안번호 : 제523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09. 25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비용을 줄이고, 신체·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,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,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금주구역 지정 · 변경 등의 규정(안 제3조~안 제5조)
- 다. 교육 및 홍보, 연구 단체 지원 등의 규정(안 제7조~안 제8조)
- 라.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규정(안 제11조)
- 마. 과태료 규정(안 제12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8조의4, 제34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5. 09. 30. ~ 2025. 10. 04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의 개정(2020.12.29.)을 반영하여,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·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

※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(금주구역 지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, 설치 방법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(본조 신설: 2020.12.29.)

- 현행 조례에서는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'음주청정지역'으로 지정·관리하도록 하였으나,  
※ 25. 10. 현재 조례상 '음주청정지역'으로 지정된 장소는 없음

-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 음주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에, 금주 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## □ 주요내용

### ○ 안 제1조(목적) 정비

조례의 목적을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함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--- 구민-----.

### ○ 안 제2조(정의) 제3호 정비, 제4호 신설

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'음주청정지역'을 '금주구역'으로 정비하고, '금주' 및 '금주구역'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

#### 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3. “음주청정지역” 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  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(정의) ----- --.  3. “금주”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  4. “금주구역”이란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.

### ○ 안 제3조(금주구역의 지정) 제목 및 내용 정비

- 제3조 제목을 '음주청정지역의 지정'에서 '금주구역의 지정'으로 변경함.

이는 2020.12.29.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- 제1항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<sup>1)</sup>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음주로 인한 유해요인을 예방하려는 것임.
-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,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되 지역축제나 행사 등에 서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규정임.

### 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 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3. 버스 정류소 · 택시 정류장 (신설 20 15.11.5, 개정 2021.3.18.)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금주구역의 지정) ① ----- 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금주구역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버스 정류소 · 택시 승차대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-----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----- 설치 또는 부착---.</p>

1)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)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(이하 “학교경계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· 고시하여야 한다.

1. 절대보호구역: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(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)

<p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 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③ ----- 금주구역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p> <p>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○ 안 제5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 신설

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금주구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신설함.

### ○ 안 제11조(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) 신설

구청장은 음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에 연계하는 규정을 신설함.

### ○ 안 제12조(과태료) 신설

법 제34조제3항제1호<sup>2)</sup>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구청장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, 그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도록 하여 금주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.

2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 2010.5.27, 2016.3.2, 2017.12.30, 2020.12.29>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## 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, 해당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조례에서 운영 중이던 '음주청정지역' 제도를 법률 용어인 '금주구역'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 체계를 일원화하고, 금주구역에 학교 절대보호구역을 추가 하며, 금주구역 지정 절차,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, 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조문 표현을 정비하고 문장을 명확하게 조정하는 등 금주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- 다만, 금주구역 지정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내 일정한 장소에 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공공질서 유지, 어린이·청소년 보호, 주민 안전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나,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. 따라서 공공장소 음주 폐해와 음주 조장 환경, 주민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안내·홍보 및 필요시 예외 허용을 병행하여 금주구역이 원활히 지정·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